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행정기획위원회(기획예산과)

의안번호	제9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2. 08. 17.)
의 안 명	2022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변경이유

- 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관내 노후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등)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
- 나. ‘길음 청년 창업센터 건립’ 관련 물가상승에 따른 자재비 인상 및 설계비·철거공사비를 증액하여 안정적인 공공시설 건립 추진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3조
- 2) 설치목적 :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 3) 설치연도 : 1995. 3. 6.(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제정 2006. 5. 30. 조례 제655호)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재건축, 이전신축 포함)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기본조사 설계, 실시 설계,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원

2)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돈암1동 주민센터 건립(임시청사, 설계 및 공사) : 3,515,128천원
- 길음2동 주민센터 건립(설계 및 공사) : 2,287,000천원
- 정릉2동 주민센터 건립(타당성 조사) : 50,000천원
- 길음 청년 창업센터 건립(설계 및 공사) : 300,000천원

다. 2022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1) 기금변경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기금규모(수입 · 지출)	75,879,035	91,225,795	15,346,760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75,879,035	91,225,795	(증)15,346,760	
예치금회수	66,090,659	66,275,795	(증)185,136	2021년 결산 반영
기타회계 전입금	8,800,000	23,800,000	(증)15,000,000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증가
이자수입	988,376	1,150,000	(증)161,624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예상분

○ 지출계획변경

(단위 : 천 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75,879,035	91,225,795	(증)15,346,760	
사무관리비	70,840	70,840	-	-
시설비	5,966,000	6,178,524	(증)212,524	길음 청년 창업센터 설계비·철거공사비 증액
자산취득비	16,128	16,128	-	-
기타자본이전	100,000	100,000	-	-
예치금	69,726,067	84,860,303	(증)15,134,236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및 이자수입 증가

3) 2022년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 원)

조 성 액	-	사 용 액	=	2022년말 조성액(잔액)
91,225,795		6,365,492		84,860,303

3. 참고사항

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전입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B)	비용자성 사업비	
2016년 까지	116,034,828	107,582,166	7,543,001	909,661	114,762,902	114,762,902	1,271,926
2017년	1,322,596	1,274,142	48,454		420	420	1,322,176
2018년	1,715,189	1,641,317	73,872		420	420	1,714,769
2019년	7,430,823	7,308,498	122,325		560	560	7,430,263
2020년	25,831,403	25,500,000	331,403		840	840	25,830,563
2021년	32,370,742	31,770,742	600,000		3,849,780	3,849,780	28,520,962
2022년	9,788,376	8,800,000	988,376		6,152,968	6,152,968	3,635,408
계	194,493,957	183,876,865	9,707,431	909,661	124,767,890	124,767,890	69,726,067

나. 2021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결산내역

1) 2021년 기금조성 내역(2021.12.31.기준) (단위 : 원)

2020년도말 조성액 ㉠	2021년 증감액			2021년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수입) ㉠	사용액(지출) ㉡	
37,569,697,480	30,214,692,732	32,285,650,732	2,070,958,000	67,784,390,212 *(1,508,595,000)

* (사고이월 / 일자리경제과) 길음 청년 창업센터 부지매입비를 포함

2) 2021년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계	69,855,348,212	계	2,070,958,000
일반회계전입금	31,770,742,000	기본경비	840,000
예치금회수	37,569,697,480	정릉2동 국유지 매입	192,660,000
이자수입	514,908,732	창업센터 부지 매입	1,877,458,000

3. 검토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증액분을 반영하고,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 한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¹⁾ 단서조항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기정예산 758억7,903만원보다 20.26%인 153억4,676만원²⁾ 증액된 912억2,579만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 한 것임.

○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3조³⁾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기금의 용도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 202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이 기정예산 88억원에서 150억원이 증액 편성됨.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3조(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① 구의 공용청사 및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건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5.14, 2020.12.31.)

는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및 부대경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및 부지매입비,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등임.

-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노후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 재원 조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추가 확보하여 향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14.)

1. 일반회계 전입금 (구세 및 세외수입의 1% 이상) (개정 2017.12.28, 2020.5.14, 2020.12.31.)
2. 교부금 및 보조금 (개정 2020.5.14.)
3. 삭제 (2017.12.28.)
4.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20.5.14.)
5.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5.14.)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4.)

1.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신·증·개축, 재건축 포함) 경비 (개정 2020.5.14.)
2.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관련 부대경비 (개정 2020.5.14.)
3.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신설 2020.5.14.)
4.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신설 2020.5.14.)
5. 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신설 2020.5.14.)